

○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5월 30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6월 16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신강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,
-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명중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”으로 하고,
- 제1조 목적중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”으로 하는 것임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중갑)

- 현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하여,
- 여비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u>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교육감</u>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 . . . . 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</u> . . . . .</p> <p>. . . . .</p> <p>. . . . .</p>
<p>제3조(준용)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공무원여비규정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3조(준용) . . . . .</p> <p>. . . . . 「<u>공무원여비규정</u>」 . . . . .</p>